

“동력자원부 공고 제89호에 대한 의견”

비현실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김 응 갑

환경열관리 연구소소장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의 제정 또는 개정원칙

88. 2. 25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요지,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주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전통과 현실 및 미래 : 전통문화, 과학, 역사 등을 현실과 미래의 변화에 알맞게 발전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원칙하에 평등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노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부처간 법규 연관 : 관련부처간 법규의 연계가 간단 명료하여 통상의 상식을 갖는 국민이 이해나 실천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실정법규의 개선 : 헌법취지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실정법은 과감히 버리고 4,000달러 국민소득 시대로 확대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 구조의 전문화에 알맞는 법규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동력자원부 공고 제89-9호 1.항 나.호 세부규정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원칙하에 평등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노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 ”

가. 5호 설치시공 확인의 세부절차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고시 제88-15호 1.입회기관 : 가.호와 나.호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검정법령 제30조에 위배되며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법령 제30조에 위배되며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온돌기능사의 차별대우 조항이다.

나. 고시 88-15호 1. 입회기관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이유에 의하여 나.항 한국온돌시공협회로 통합됨이 원칙이나 기득권을 인정하여 가.항과 나.항의 입회신청 시공업자 범위를 동일하게 개

정하여야 한다.

(1) 국어사전의 용어부터 정리 : (제 22조 제1항 제1호 관련)(별표 9) 1. 기관(汽罐) : 연료를 때어 물을 가열시켜서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큰 쇠가마(boiler). (機關) : 1. 물건을 활동시키는 장치를 해놓은 기계(machine). 2. 행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된 것(organ). 3. 열에너지를 받아 이것을 기계적 에너지로 하여 다른데로 보내는 기계장치 곧 증기기관, 내연(內然)기관(engine) 원동기 : 자연계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동력으로 바꾸는 기계. 연료 연소의 열을 이용하는 열기관. 수력 이용의 수력기관. 전력이용의 전동기, 풍력이용의 풍력기 등으로 분류, 발동기, 이상의 용어해설에 의하여 분류번호 1—1001과 1—1002는 원동기에 해당됨이 명확하여지므로 (별표 12)제1종 기술요원은 원동기 기능사를 선택함이 당연하다.

(2) 온수보일러의 분야 및 표시사항 변경 : 국어사전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통솔이다. 다만(별표 9) 1—1003 표시사항 3.용도(난방용, 급탕용, 음료용 등)으로 규정되고, 온수보일러의 연료는 다양한데 유독 구명탄용만을 분리한 것은 모순된 고시이나 동자부고시 제86—53 호 1.적용범위 주(1) 구명탄용 온수보일러라함은 구명탄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열을 열교환 매체인 순환수에 공급 시킴으로서 부분적 내지 전체적인 난방 또는 급탕목적을 달성키 위한 장치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안내서에 온돌기능사는 건축분야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부고시 제396로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온수온돌의 시공에 관한 구조와 재료 및 시공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온돌직종 기능사 훈련과정 직업훈련 기준(훈련직종번호 : 07—12—10) 3.항 가.호 훈련직종의 정의 : 보일러, 파이프,

연소통, 벽돌 및 시멘트 등의 온돌재료와 기기를 사용하여 각종 온돌을 건축물 시공에 알맞고 최대의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시공방법을 활용하여 온수온돌, 구들온돌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기능에 관한 직종.(국제표준직업분류상의 관련직업)으로 시대적 욕구에 알맞게 개정되었고 실기 훈련내용에 연료공급배관작업과 각종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명기되어 훈련과정도 과거 6개월의 실시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따라서(별표 9)의 1—1003과 1—1004는 구분을 난방기기로 하고 표시항목을 온수통-슬이라 하여 건설부고시 제396호에 통합 관리되어야 함이 상식이요 관계 법령의 집행에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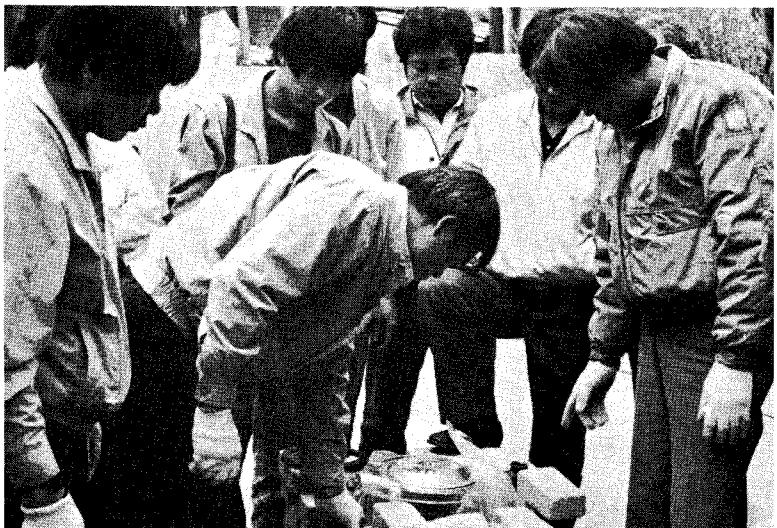
3. 동력자원부공고제 89-9호 1.항 아.호 제2종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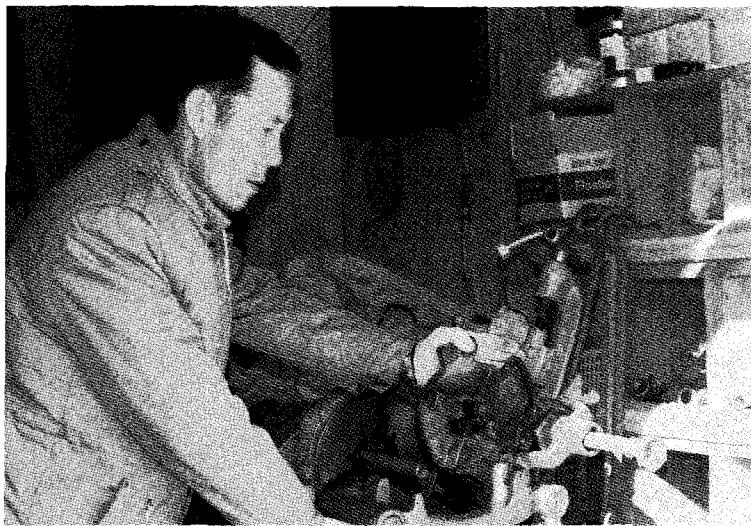
시공업의 기술요원은 국가기술자격법령 제30조 1~4항에 의하여 배정되어 동법 제1조의 목적인 기술인력의 자질과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가. 별표 12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13과 같이 1종, 2종, 5종 품목명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여 분쟁의 여지가 높다. 종별기술요원 구분은 01 해하기 불가능한 축제거리가 아니라 고 할 수 없다. 2종의 1항에 4종의 기술요원 자격자를 포함시키고 비고:

별표 12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13과 같이 1종, 2종, 5종 품목명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여 분쟁의 여
지가 높다. 종별기술
요원 구분은 01 해하기
불가능한
축제거리가 아니라
고 할 수 없다. 2종의 1항에 4종의 기
술요원 자격자를
포함시키고 비고:
1—3항 삽입으로
5종은 1, 2, 4종 기
술요원 전체가 기
술요원으로 될 수
있고 2종은 온돌기
능사를 제외한 기
술요원 모두가 참
여할 수 있는 특례
를 부여하고 있다.

● ●





종별기술요원 구분은 이해하기 불가능한 숙제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종의 1.항에 4종의 기술요원 자격자를 포함시키고 비고 : 1—3항 삽입으로 5종은 1, 2, 4종 기술요원 전체가 기술요원으로 될 수 있고 2종은 온돌기능사를 제외한 기술요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기술 자격검정 안내서에 의하여 별표 12의 기술요원의 분야 및 시험과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계기사1급(1,2,5종 해당) : 기계분야, 시험과목 : (필기) 1.기계공작법 2.기초역학 3.열동력, 기계재료, 기계진동 4.유체기계(실기) 기계 및 기계구조물설계

(2) 열관리기사1급(1,2,4,5종 해당) : 에너지분야, 시험과목 : (필기) 1.연소 공학개론 2.열관리법규 3.공업열역학(열 관리부분) 4.계측방법 5.열설비의 설계(실기) 열관리 실무

(3) 가스기사1급(1,2,5종 해당) : 안전관리분야 시험과목 : (필기) 1.유체역학(가스부분) 2.연소공학 3.가스설비 4.가스안전관리기술 5.가스관계법규(실기) 가스기술

(4) 가스기사2급(1,2,5종 해당) : 안전관리분야 시험과목 : (필기) 1.연소 및 폭발 2.가스설비 3.가스안전관리기술 4.가스관계법규(실기) 가스기술

●●

특히 2종과 5종의 품명 온수보일러는 2항 나호의 (1) 및 (2)에서와 같이 난방용, 급탕용, 음료용 등으로 되어있고 상식적으로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급탕과 음료 수를 겸한 온수온돌난방의 얼굴급기 이므로 건설부고시 제396호와 동자부 고시 제87-46 또는 87-47은 따로 분리취급하는 것은 모순된 제도이다.

●●

(5) 원동기취급기능사1급(교육이수자 2,4,5종 해당) : 기계분야 시험과목 : (필기) 1.기계재료 2.원동기구조학 3.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법규 4.안전관리(실기) 원동기의 조작 및 정비작업

(6) 원동기시공기능사1급(1종,2,4,5종 해당) : 기계분야 시험과목 : (필기) 1.배관일반 2.원동기구조 3.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법규 4.안전관리(실기) 원동기의 시공작업

(7) 원동기시공기능사2급(2,4,5종 해당) : 기계분야 시험과목 : (필기) 1.배관일반 2.원동기구조 3.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법규 4.안전관리(원동기)(실기) 원동기의 시공작업

(8) 열관리기능사2급(교육이수자 2,4,5종 해당) : 산업용분야 시험과목 : (필기) 1.열관리법규 2.열설비 3.계측기기 4.안전관리(실기) 열관리 실무

(9) 4년제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1,2,5종 해당)

(10) 온돌기능사1급(5종 제삼순위 해당) : 건축분야 시험과목 : (필기) 1.건축구조 2.건축시공 3.건축제도 4.온돌 및 구명탄용 보일러 구조 5.온돌시공(실기) 온돌시공작업

(11) 온돌기능사2급(5종 제4순위 해당) : 시험과목 : (필기) 1.일반구조 2.건축제도 3.온돌 및 구명탄용 보일러구조 4.온돌시공(실기) 온돌시공작업

(12) 온돌기능사보(온수온돌)(교육이수자로서 5종의 제5순위 해당) 위 3.의 가.항과 같이 현재까지 분류된 약 900종의 국가기술자격 직종은 국제화에 상응하게 국제표준직업 분류상의 관련직업으로 분류되어 개별 직무영역을 부여하여 전문화하고 있어서 해당 직무영역 이외에서는 무자격자인 것이다. 특히 2종과 5종의 품명 온수보일러는 2항 나호의 (1) 및 (2)에서와 같이 난방용, 급탕용, 음료용 등으로 되어있고 상식적으로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금탕과 음료수를 겸한 온수온돌난방의 열공급기이므로 건설부고시 제396호와 동자부 고시 제87-46 또는 87-47은 따로 분리 취급하는 것은 모순된 제도이다.

또한 보일러 없는 건설부고시 제396호 6-2 온수순환상태시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마감작업 후 6-1의 마감층 평활도 시험은 무의미한 것이다. 반면 온돌난방의 주역인 방열관 없는 동자부고시 제87-47호 5-1의 수압 및 안전장치, 5-2의 보일러의 연소 및 배기성능, 5-3의 보온상태, 또는 동자부고시 제87-46호 5-1의 수압 및 안전장치, 5-2보일러의 연소 및 배기성능관계, 5-3의 연소 계통의 누설, 5-4의 온수순환등 설치, 시공검사는 불가능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민에 피해를 주고 항상 책임소재의 분쟁이 따르게 된다.

온수보일러는 비검사 대상기기로서 국가기술자격 관리자가 따르지 않고 가족 또는 총상인이 조정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통합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건축법 제23조의 3.(온돌의 구조) (1), (2)항과 제23조의 4.(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방지)의 관련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으로도 비검사대상 열사용기자재의 에너지 절약목적은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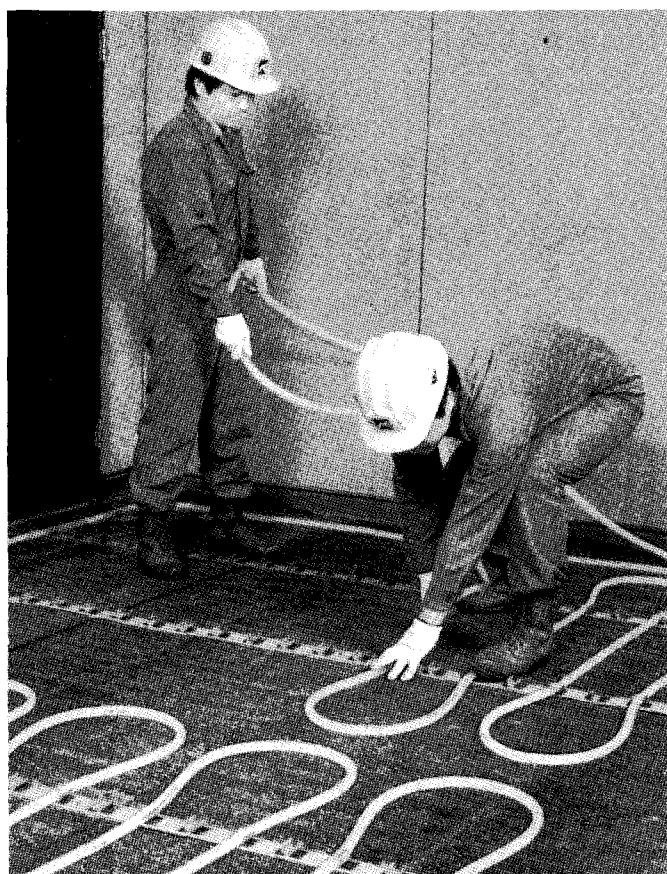
(1) 열발생장치, 열이동장치, 축열겸방열바닥장치, 배연장치, 부대시설등을 일체로 시공완성한 상태를 고유의 전통문화 온돌이라고 하는데 이를 열발생장치와 열이용장치 열이용장치 및 배연장치로 동강내는 것은 전통문화발전 계승을 가로막는 것으로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2종과 5종의 구분 : 온수보일러의 열원은 구명탄, 석탄, 유류, 가스, 전기,

모든 직종에 있어서 수요가 적고 직무영역의 기능사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을 때 임시 제도를 마련 시한부(온돌 2년) 교육을 거쳐 유경험자(온돌 3년)의 직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보장하여 주고 있으나 그 실시후 3년 이내에 유경험 3년 미달자 부터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기득권자는 교육시한 2년 경과시마다 재교육하여 계속 혜택권을 연장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또한 해당직종의 기능사 필요 인원이 총족될 때까지 유사직종의 기능사로 하여금 시한부로 대행하게 하는 관례도 있다.

태양열, 핵융합열 등 다양화 되고 있는데 유독 구명탄용만을 분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5종은 전열면적 5m²이하로 2종과 구분하거나 2종과 통합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3) 과도기 제도 종식 : 모든 직종에 있어서 수요가 적고 직무영역의 기능사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을 때 임시 제도를 마련 시한부(온돌 2년) 교육을 거쳐 유경험자(온돌 3년)의 직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보장하여 주고 있으나 그 실시후 3년 이내에 유경험 3년 미달자 부터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기득권자는 교육시한 2년 경과시마다 재교육하여 계속 혜택권을 연장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또한 해당직종의 기능사 필요 인원이 총족될 때까지 유사직종의 기능사로 하여금 시한부로 대행하게 하는 관례도 있다.





이러한 통례에 따라 원동기시공기능사 1급이 1,2,4,5종을 등 2급이 2,4,5종을 겸직하였던 것이고, 유사직종에 가깝거나 유경험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2,4,5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득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온돌기능사 필요인원이 확보된 현시점에 새로운 기득권 혜택부여는 당연히 88년 말을 기점으로 중지하고, 사양길에 접어든 구명탄용 온수온돌만을 설치, 시공하게 되어있는 기술요원 배정을 최소한 기득권자와 동등하게 온돌기능사의 주직무영역인 2종의주 기능인란 1.항에 온돌기능사 1급 또는 2급을, 보조기능인란 2.항에 온돌기능사(보) 교육수자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추가교육 :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하므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직종은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시대적변화에 대응하도록 추가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직무영역이 급변하는 온돌기능사의 추가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3.항 2종 기술요원 배치변경에 따른 국민(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술적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5) 관련부처와 협의 : 에너지이용합

●●
온돌 기능사 필요인원이 확보된 현시점에서 새로운 기득권 혜택부여는 당연히 88년 말을 기점으로 중지하고, 사양길에 접어든 구명탄용 온수온돌만을 설치, 시공하게 되어 있는 기술요원 배정을 최소한 기득권자와 동등하게 온돌기능사의 주직무영역인 2종의주 기능인란 1항에 온돌기능사 1급 또는 2급을, 보조기능인란 2항에 온돌기능사(보) 교육수자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

리화법령의 개정은 동법 제16조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건설부와 노동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6) 정부의 기본시책 : 현법에 위배되고 국민의 평등한 기본권에 위배되어 불편을 주는 실정법을 단시일내에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서는 주무부처로 종합관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온돌의 다변화관리를 건설부로 이관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분쟁의 불씨나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최근에 큰목소리나 다수집단 투쟁의 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정당한 주장은 국민개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현법의 기본취지나 공정한 기본법 또는 상식에 위배되는 요구는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불평등 법규가 되어 분쟁이 지속되어 혼란이 계속됨은 물론 법정투쟁으로 다시 개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므로 대화로서 설득하여 공평한 제도가 마련되어 화합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